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세부사업명	<u>식량작물공동(들녘)</u> 경영체육성						4	치단체 상보조
내역사업명	<u>식량작물공동(들녘)</u> 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u>+</u> 원)	2,190
사업목적	는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 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 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원한도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3천만원, 총 5회까지 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10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17년	2018년		2019년	2020	
재정투입	<u>합계</u> 국고		000	2,000		3,000	4,380	
현황	국 고 지방비		000	1,000 800		1,500 1,200	2,19	
	지방비 800 800 1,200 1,752 자부담 200 200 300 438							
담당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차					낚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윤준수		044-201-1838 044-201-1837	
신청시기	사업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니·군·구
관련자료	결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세부사업명	<u>식량작물공동(들녘)</u> 경영체육성 세목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u>식량작물공동(들녘)</u> 경영체육성 시설·장비 지원 예산 (백만원) 11,542									
사업목적	는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 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유통여건	개선을	을 위해	공동(량작물 기변 영농작업 회 시설·장비·	효율성	성 제.		•	
국고보조 근거법령										
지원자격 및 요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한 경영체									
지원한도	사업기간 1~2년, 2억원(다만,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1~5억원 내에서 차등 지원), 총 3회까지 지원									
재원구성 (%)	국고	5	5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10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u>l</u>	2017년	1	2018년			 2019년)19년 2020년	
	<u>· · -</u> 합 겨		7,000					13,500	23,084	
재정투입	국고	<u>l</u>	3,500		2,500			6,750	11,5	542
현황					2,000	5,400			9,234	
	자부든	-	700		500			1,350	2,3	08
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윤준수		044-201-1838 044-201-1837		
신청시기	사업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세부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세목 자치단체							-		
							_	자 자	본보조	
내역사업명	<u>식량작물공동(들녘)</u> 경영체육성 사업다각화 지원 예산 (백만원) 6,870									
사업목적	는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									
71877		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생산 또는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들녘 (논+밭) 이용의 다양화, 논 타작물 및 밭작물 등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교육·컨설팅 지원) 3년 이상 사업을 추진한 우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지원한도	사업기간 1~3년, 5~50억원 내외, 총 2회까지 지원									
재원구성 (%)	국고	4	.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20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u> </u>	201	17년	2018년			2019년	202	0년
	<u>합</u> 겨		14,	000	17,000			10,918	17,175	
재정투입	국고	<u> </u>	5,6	500	6,800			4,367	6,870	
현황	지방비		5,6	500	6,800	4,367		6,870		
	자부담 2,800 3,400 2,184 3,435									
담당	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정순일 044-201-1838						-1838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윤준수		044-201-1837		
신청시기	사업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국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I 주요내용

☞ 식량작물선도경영체교육훈련 사업시행지침은 별도로 규정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인정 기준 ≫

-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예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 농지 기준 :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 공동영농 농지가 일부 분산되어 있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형태로서 공동영농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로 인정
 - * <u>행정구역과 관계없이 50ha 이상 공동경영단지를 1개소로 인정하되, 농지가 강이나</u>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경영 면적이 400ha(밭 식량작물의 경우 150ha) 이상인 경우는 별도 경영체로 구성 가능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인정기준>

- <u>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타작물 면적 5ha 이상, 공동영농면적 10ha 이상, 참여</u> 농가수 15명 이상, '22년까지 추가로 50ha 이상 확대 계획이 있는 단지는 신청 가능
- * 논 면적이 적은 시·군(3천ha 미만)은 논 타작물 재배면적이 50% 이상이면서 순증 면적이 30ha 이상이고 최종 50ha 이상으로 확대계획을 보유하면 신청 가능
- <u>단지화 대상품목</u> : 두류, 서류, 잡곡류에 한함. 단, 기계화와 쌀 대비 소득보전이 가능한 품목은 제한적으로 허용(해바라기, 연근, 가공용쌀* 등),
- * 가공용쌀의 경우 계약재배 주체가 농가 및 필지관리를 통해 밥쌀용 시장으로 유출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ㆍ선정된 지역이어야 함
 - * (경과규정) : 시설·장비는 '20년 신청자, 교육·컨설팅은 '21년 신청자부터 적용
 -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23년 신청자부터 적용
 -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 절차 등은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붙임 5 참고
- 쌀은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여야 함
- 계약재배 약정체결만 하고 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출하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 * 다만, 농업법인으로 연간 쌀 1,000톤 이상 가공실적이 있는 도정공장을 자체보유 하거나, 그러한 도정공장과 계약재배 후 출하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 '20년 신청자부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 농지(논)에서 생산되는 벼를 ① 일정비율, ② 일정기간 이상 출하한 실적이 있어야 지원 자격 부여
 - * 일정비율 및 기간: [교육·컨설팅] (최초 신청) 출하약정 체결, (2년차) ① 5%, ② 1년, (3년차) ① 10%, ② 2년, (4년차) ① 15%, ② 3년, (5년차) ① 20%, ② 4년, [시설·장비] ① 10%, ② 2년, [사업다각화] ① 20%, ② 3년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 하여야 함
 - * 조합원 5인(시설·장비 10인, 다각화는 1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 조합원 요건은 향후 5명씩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 예정
 - * 총 출자액 1억원(시설·장비 2억원, 다각화는 3억원) 이상
 -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 * 설립 후 운영실적이 (교육・컨설팅) 1년. (시설・장비) 2년. (다각화) 3년 이상
 - *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 논 타작물 운영주체는 조합원 5인 이상, 출자액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내역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예비)식량작물공동 (들녘)경영체
 - * 지자체 자체 평가결과 (읍・면) 2개소 이내, (시・군) 5개소 이내('20년 신청자부터 적용)
- (시설·장비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한 식량작물공동 (들녘)경영체
 - * 지자체 자체 평가결과 (읍・면) 1개소 이내, (시・군) 3개소 이내('20년 신청자부터 적용)
- (사업다각화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한 우수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 * 지자체 자체 평가결과 (읍·면) 1개소 이내, (시·군) 1개소 이내('20년 신청자부터 적용)
- (공통)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 적용사항
 - ① 사업신청 당시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상반기에 70% 이상 추진한 경우에만 자격 부여(초과 실적을 보유한 경우 미 적용)
 - ② (경과규정) '19년에 한해 1회 이상 추진한 경우(①항목 충족 조건)도 자격 부여
 - ③ 유사 또는 자체사업으로 교육·컨설팅사업을 추진한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 결정
- 지원제한 기준
- 세부사업별 총 지원횟수는 (교육·컨설팅) 5회, (시설·장비) 3회, (다각화) 2회까지 지원(최근 10년간)

-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는 사업추진 중에는 추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년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 논 타작물 운영주체는 당초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경우에는 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
 - * '17년 사업자('16년 신청자)부터 적용('17년 사업자는 '18~'19년에는 지원 제한, '20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은 전년도에 신청하므로 '19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시설·장비는 '18년 사업자('17년 신청자)부터 적용
-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 '18년 신청자(포기는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지원 제한
- 사업비를 이월한 지역(시·군)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
 - *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20년~'22년 까지 신청 제한)
-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 '20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20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1~'23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20~'22년까지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 '19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9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20년~'24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정부지원 RPC 등과 체결한 출하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 이행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은 인정)

3. 지워대상

-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 (시설·장비 지원) 공동영농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지원
- (사업다각화 지원) 생산 및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타작물 재배 등 논 이용의 다양화, 밭작물과의 연계 등을 통한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 지원
- (공통)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최종결정하며, 과잉보유 시설·장비(유사사업 지원 등)의 추가지원은 불가
- 벼 건조·저장 시설 및 쌀 도정시설은 신청·지원 불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등으로 신청
- <u>논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논콩 재배기술 전문가 교육 과정 등을 이수하였거나</u> 이수 계획이 있는 경영체 우선 선정
- <u>'22년까지 단지화가 가능한 경영체는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우선 지원</u>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교육·컨설팅 지원

─≪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설정·운영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개발한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을 전수(傳受) 교육 및 인증 받은 컨설팅 업체(컨설턴트)를 통해 사 업을 수행하여야 함
- ② 교육비와 컨설팅비는 개별 사용이 불가하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단위로 통합·운용되어야 함
- 교육·컨설팅은 전문 컨설팅 인증업체를 통해 일괄 추진하여야 함
- ③ 본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 보조금 또는 지방비 부담금이 재원인 교육·컨설팅 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교육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타 작물재배, 작부체계 전환, 밭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및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 (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등

나. 시설·장비 지원

-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논 타작물 재배 및 밭작물과의 연계를 위한 작부 체계 전화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논 타작물 및 동계 조사료 재배, 밭작물과의 연계 등 경영체의 작부체계 특성에 따라 타작물 파종기 및 수확기, 조사료(건초) 생산장비 등
- 공동육묘장의 경우 사업다각화 지원의 건축물 기준 준용

다. 사업다각화 지원

-≪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

- (방향) 농지 이용의 다양화·전문 단지화(논 타작물 전환, 밭작물 연계, 기능성 특수미, 가공용 등), 생산된 식량작물을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 운 사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 규모화로 발생한 농지·인력 등의 유휴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쌀 중심의 소득구조를 다원화하고 참여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방식) 타작물 재배 및 밭작물 연계, 타 산업 분야 확대를 중심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쌀 중심의 규모화 계획 수립은 최소화
- 사업다각화는 크게 타작물 재배, 밭작물 연계, 이모작 확대, 생산 농산물 가공·유통, 체험·관광 연계 부문으로 나누어 계획 수립
- ① 타작물 재배, 밭작물 연계, 조사료 및 이모작 확대, 6차산업화를 위한 가공·유통 설비 및 건축물은 총사업비 내에서 별도 한도 없이 수립 가능
 - · 밭작물 연계 및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한 잡곡 및 맥류, 조사료, 찰벼, 유색미 등을 활용한 6차 산업화 포함
 - · 단순가공 이외 제분·제면·라면·빵·떡·한과·주류 제조, TMR 등 가공사업도 포함
- ②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시설은 취급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해당 취급 품목 수급상황에 따라 조기 출하 또는 출하 연기 등 정부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함(만일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후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음)
- ③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시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하며, 숙박시설 및 축사는 제외
 -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 숙박시설은 필요 시 지역숙박업체 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연계
- ④ 쌀 관련 생산·유통기반 구축은 기존 시설·장비 지원, 쌀 적정 생산 및 RPC 중심의 통합·규모화를 고려하여 총사업비의 최대 30% 한도에서 수립
 - · 일반 벼 건조·저장, 도정을 위한 시설·장비는 제외하여야 함

-≪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_ >

- ⑤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은 각각 총사업비의 최소 5% ~ 최대 10% 한도 수립
 - · 다각화에 수반되는 전문 교육·컨설팅과 공동영농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포함하여 수립. 단,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 부분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준해 실시하여야 함
 - ·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한 회계·법무법인 자문계획 포함 수립
 - ·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마케팅을 위한 식량 작물공동(들녘)경영체별 브랜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계획 포함 수립
 -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계획 포함 수립
 - ·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⑥ 인건비, 유류비, 종자대 등 운영비는 제외하여야 함
- (컨설팅)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필요한 법인의 조직관리·경영 및 인사·회계 관련 분야,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소득창출 및 일자리 연계·창출 방안 등
- (기반정비) 쌀 중심에서 타작물 재배 및 밭작물 연계, 이모작 확대를 위한 배수개선, 토양개량 등 생산기반 정비
- (시설·장비)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판매, 체험·관광과 연계를 위한 시설· 장비, 생산품목 변화·사업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설·장비
- 선별 및 가공시설 등 : 입고, 건조, 정선, 선별, 색채선별, 석발, 집진, 정맥, 연맥, 통밀 도정, 제분, 블랜딩, 제면(호화건면, 숙면 등 포함), 라면, 빵, 떡, 한과, 엿, 누룽지, 주류, TMR, 포장, 로봇적재시스템, 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자동품질관리시스템, 출고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건조기 등

- *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 사업다각화 지원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건축물) 가공·판매 및 체험·교육 등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감리, 건축·토목, 건축물 부속 기계·설비 등
- 감리비 :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 * 간이설계는 사업신청년도 3월말, 실시설계는 9월말까지 총 사업비 외 순수 추가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내 기초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가공공장, 포장장, 출하장, 제어실 및 품질검사실, 판매장, 체험장, 홍보관,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 가공시설을 건립하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기계·장비별 설치 기준
- 입·출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설치
- 건조시설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

- 저장시설 : 연간 산물형태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 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 효과 이상)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설치 가능)
- 품질검사장비: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원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원료 품위 및 단백질측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 건조기, 함수율측정기, NIR 성분등급판정기, 이미지 외관검사기 등)로 설치
- 저온저장시설: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10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중 일정온도 이하 (보관 품목에 따라 저장조건 등 설정)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로 설치
 -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가. 교육·컨설팅 지원

- 지원기준: 30백만원
- 사업의무량(붙임 1 참고)
 - ▶ 회원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1회당 3시간(강사 1명 이상) 이상
 - ▶ 리더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1회당 6시간(강사 1명 이상) 이상
 - ▶ 실습교육(선진지 견학 등) : 1회(리더 및 회원 농가 대상 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 컨설팅 : 10회 이상, 컨설턴트 2명 이상 참여, 8개월 이상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참고 2) 기준

- 사업기간 : 1년(총 5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 연차평가를 마련·시행하여 2021년도 신청자부터 적용(추후 안내)
 - * 시설·장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컨설팅 지원은 자동 선정
 - * 사업다각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컨설팅 지원은 제외(중복 지원 방지 목적, 사업다각화 지원기간 동안에는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 (추가)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선정 경영체는 교육·컨설팅 자동선정과 논 타 작물 재배 확대 및 이행을 위해 콩 등 전문가 교육 과정 이수 권고
- 사업규모 : 매년 100개소 내외
 -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나. 시설 · 장비 지원

- 지원기준 : 1~5억원(다만,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 <u>농가가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등의 지원은 최소화하고, 논에서 밭작물을</u> 생산할 수 있는 장비 위주로 지원
 - * 필요 이상의 고가장비 구입 방지를 위하여 주요 장비별 최고지원 한도 설정 운영
 - * <u>농가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등은 최소화하고, 파종기, 부착기, 콩 전용 콤바인</u> 과 배수개선 굴착기 지원
 - * 필요 이상의 고기장비 구입 방지를 위하여 주요 장비별 최고지원 한도 설정 운영

무굴착 암거배수(1ha 기준)	굴착식 암거배수(1ha 기준)
○ 암거 유공관 비용 = 2,600천원	○ 암거 유공관 비용 = 3,000천원
* 랩핑 암거관(Ø50mm) 매설기준(5m 간격)	* 유공 암거관(Ø100mm) 매설기준(7m 간격)
○ 자재비용 = 700천원	○ 자재비용 = 4,302천원
- 농수관(급·배수관), 엘보, 정티, 소수재(왕겨)	- 필터매터, 배수밸브, 소켓, 소수재(자갈)
○ 지하수위 조절기 = 1,300천원	○ 지하수위 조절기 = 1,300천원
○ 암거관 매설비용 = 1,900천원	○ 암거관 매설비용 = 5,100천원
- 트랙터 및 굴삭기 임대, 인건비	- 트랙터 및 굴삭기 임대, 인건비
합계(A) = 6,500천원	합계(A) = 13,702천원

- 사업기간 : 1~2년(총 3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 <u>논 타작물 단지화 지원(단지화 운영주체 타작물 면적 확대 목표 달성 시 지원 제외</u>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지원)
- 사업규모 : 매년 40개소 내외
 -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다. 사업 다각화 지원

- 지원기준 : 5~50억원 내외
 - * 사업계획 평가 검토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사업기간 : 1~3년(총 2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 사업기간 및 연차별 지원비율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사업규모 : 매년 5~10개소 내외
 -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u>사업다각화에서 시설·장비(농기계류)</u>는 지원 제외 또는 제한
 - * <u>일반작물은 20% 이하, 조사료는 TMR</u> 공장 건립 의무화와 농기계 50% 이하
- 지원조건 : 보조(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라. 의무부과

- 향후 3년 내 타작물 재배면적 추가 50ha(조사료는 100ha) 이상 확대 (예시 : 1년차 20ha, 2년차 20ha, 3년차 10ha 이상 등) 의무 부여
 - * 공동경영면적(배후면적)은 최소 50 ~ 100ha 이상으로 확대 의무 부여
- 쌀로 회귀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유지 의무 부여(서약서 제출)
 - * 5년간 유지 의무 위반시 보조금 회수 및 지원제한 대상 등으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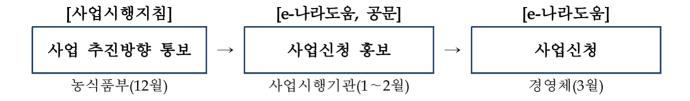
- 공동경영 면적 대비 1년차에는 15% 이상, 2년차에는 30% 이상, 3년차에는 50% 이상 논 타작물 신청 의무 이행(확약서 제출)
- 매년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과
 - * 인센티브 : 시설・장비 추가 지원 및 다각화 지원
 - * 패널티 :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교육·컨설팅 지원 중지, 사업다각화 신청 제한,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중지 등

마. 공통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주의사항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을 변경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최소 30% 이상 편성 미 이행시 사업 선정 배제

Ⅱ /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12.31.까지)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공고 및 식량작물공동 (들녘)경영체에 안내(1.31.까지)
 - * 시·군은 e나라도움 상에 공모내역등록(세부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 필수입력 여부 설정을 "N" 처리, 별도 신청서 등 제출)하고, 신청인은 e나라도움으로 사업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과 별도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준비를 자세히 안내

사업자(신청업체)

○ 다음연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 공동농업경영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신청(3.31.까지)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납세증명서(구.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참여 의제), 출자액(자본금) 사용내역서(농협 제외), 출자액 통장 입출금 내역서 사본(농협 제외),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가설 건축물은 신고서 등, 농협 제외), 경영체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등 목록과 사진
- 공동영농작업단 구성 및 운영현황, 공동영농일지(최근 2년간), 공동육묘장 운영메뉴얼, 공동육묘일지(최근 2년간), 공동방제기 운영메뉴얼, 공동방제 일지(최근 2년간)
- 계약재배 약정서(최근 2년간), 농가별 영농일지(최근 2년간), 정부지원 RPC 등에 출하내역서(최근 2년간), 교육 이수·확인증
- 참여농가 명부, 공동영농 농지현황, 들녘 항공사진(면 단위 축적기준)
- 논 타작물 생산현황(지원금 지급내역 등), 동계 답리작 생산현황(직불금 지급 내역 등),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류실적(협회 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 내부 운영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록(최근 2년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 수익환원 내역(최근 2년간),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농협 제외)
- 표준생산메뉴얼, 농약안전사용기준 매뉴얼, 생산관리자 지정 및 운영현황 (최근 2년간), 계약재배 약정 현황(최근 2년간), 재해보험 가입현황
-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경영일지(수입·지출 관리내역서)(최근 2년간)

-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 또는 납품 실적, GAP 생산단지 지정서, 친환경인증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교육 수료증
-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비교 견적서(최소 3개소 이상, 교육·컨설팅은 제외)
- (건축물(육묘장 포함)이 포함되었을 경우)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기존 건축물대장(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간이설계도(최소 3종 이상) 및 조감도 등
- (지자체 제출서류)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회)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 (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2)
- 신청 제한 기준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에 가등기하여 구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 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됨
- 2. 지원자격 및 요건 중 지원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지자체(시・군)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농정 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 출(4.30.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지자체(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와 제출서류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5.31.까지)
-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식품부는 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 하여 대상자를 선정(8월말까지)하고, 예산 확정된 이후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12월말까지)
 -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외부 전문 평가기관(주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평가 및 심의 운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가. 선정절차(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8.31.까지)
- 신청인(신청, 사업추진 전년도 3월) → 지방자치단체(검토·평가, 전년도 4~5월) → 평가단(평가·선정, 전년도 6~8월) → 농식품부(확정, 전년도 12월)
 - * 교육·컨설팅(서면평가). 시설·장비(서면, 현장평가). 사업다각화(서면, 현장 및 발표평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 평가기관과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평가 실시
- 평가항목: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붙임 3) 참조
- 선정원칙 : 품목별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공동농업경영 및 논 타작물 재배 실적, 밭작물과의 연계가 우수한 경영체 우선 선정 지원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외부위원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5인으로 구성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에서 우선순위 확정 → 평가위원 섭외
 - 내부위원 및 간사 : 농식품부 및 농정원 담당자 등

<1단계: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6월)
- 평가대상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평가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평가조치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 서류 누락, 지원 제외대상·거짓 및 허위 신청,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2단계: 서면평가>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서면평가(6월)
- 주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평 가 자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위촉한 평가위원(3명 내외)
- 평가대상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평가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현황(공동영농 현황 및 계획, 주요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 등),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노력, 지원여건, 논 타작물 재배 참여현황, 지자체 자체평가 등(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증·평가, 시·군 평가의견 재확인)
- 평가조치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 시설·장비 지원은 예산의 1.2배 내외 규모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 다만,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소 시·도별 1~2개소 포함 가능
 - ▶ 사업다각화 지원은 예산의 2배 내외 규모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3단계: 현장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다각화는 6월, 시설·장비는 7월)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1명 내외 + 간사 1명 구성)
- 평가대상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참여 농가, 해당 지자체(시・군)
 - * 시설·장비는 사업물량에 따라 권역별 현장실사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
- 평가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역량평가,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사업계획의 정책부합도 및 충실도, 참여농가 면담,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및 지방비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
- 평가진행 : 공동영농 현장방문 후 사업계획 설명, 질의 및 응답, 사업대상 부지 실사 등
- 조치내용
 - ▶ 시설·장비 지원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 사업다각화 지원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4단계 : 발표평가>

- 현장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6월)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4~6명 내외 구성)
- 평가대상 :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역량 및 교육·컨설팅 추진실적, 식량 산업종합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다각화를 통한 비전·성과목표·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각각 1개)를 제외한 산술 평균 수치로 우선 순위 선정
 - * 평가위원이 4명 이하일 경우에는 단순 산술평균으로 우선순위 선정

나. 예비대상자 선정

- 다단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8.31.까지)
- 통보대상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다. 사업비 심의 · 조정

- 심의대상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 (다각화는 7월초, 시설·장비는 8.31.까지)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3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간이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간이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심의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후 통보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 사업비 심의 완료 후 전문심사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간이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지자체를 통해 농식품부로 제출(11.30.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단계별 평가절차에 따른 결과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8.31.까지)
- 사업다각화 선정 대상자는 교육·컨설팅 선정에서 제외(중복 지원 방지)
- 사업신청 시·도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9.15.까지)
-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예산범위(정부안)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후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 * 재정집행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별도의 사업준비 상황을 점검 실시
- 사업대상 시·도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12.15.까지)
 - * 사전준비상황(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지자체(시・도)

- 사업신청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 (가내시)(9.20.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12.20.까지)

지자체(시・군)

- 사업신청 경영체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9.25.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12.26.까지)
-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를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12.31.까지)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11.10.까지)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농식품부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 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 할 수 있음
-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5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다만,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입찰 등에 따른 초과 사업비는 추가 자부담 추진 원칙임)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30% 이하는 시·군 승인, 30% 초과부터 50% 이하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 시 는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다만, 변경금액의 합계가 30% 이하라도 3억원 이상이면 시·도 승인, 5억원 이상이면 농식품부 승인 후 조정·시행)
- 참여농가 및 공동영농 면적 조정은 10% 이하는 시·군 승인, 10% 초과부터 20% 이하는 시·도 승인, 20% 초과부터 30% 이하는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 30%를 초과 시는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군은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11.20.까지)
-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11.30.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ㆍ군 승인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 승인
 -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다만,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은 제외)
 -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추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 업 자

- 건축물(육묘장 포함) 등이 있는 경우 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관련 인허가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실시설계 : 9월말까지
-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 10월말까지
- 관련 인허가 : 12월말까지
-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군에 제출(12.15.까지)
- (농협조직)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 (농업법인) 총 자부담의 100%를 별도 통장에 입금 후 사본(통장 인감 등록 부분과 입금 금액 표시 부분)과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제출
 - ▶ 통장 인감은 법인인감과 시·군 담당자 도장을 병행 등록(자부담을 사업 개시 전에 인출해서 허위서류 제출과 행정기관을 속이는 실수 방지 목적)

- 시행업체 선정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계약 및 입찰 관련 일상감사 등 지자체 검토 : 12월말까지
- 교육·컨설팅은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수의계약 실시
- 시설·장비 및 가공시설 등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 사업추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착수 및 착공 : 사업추진년도 3월초까지
- 시설·장비 등 납품 : 사업추진년도 3월말까지(사업다각화의 가공시설 등은 건축물 준공 전까지)
- 준공 : 사업추진년도 6월말까지(다만, 육묘장은 사업추진년도 4월말까지)
- 건축물 대장 등재 : 사업추진년도 7월초까지(다만, 육묘장은 가설건축물 대장에 5월초까지 등재)
- 건물등기부등본(부기등기) 등재 : 사업추진년도 7월말까지
- 사업완료 : 사업추진년도 11월말까지(시설·장비(육묘장 포함)는 4월말, 사업 다각화는 8월말, 교육은 9월말, 컨설팅은 11월말까지)
-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년도 12월초까지(시설·장비(육묘장 포함)는 5월말, 사업다각화는 9월말까지, 교육·컨설팅은 12월초까지)
 - ※ 2년차 이상의 사업도 모든 건축물 및 시설, 장비 등은 일괄 설계·발주· 계약·시공 및 납품을 추진하여야 함
 - ※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시행(납품)업체 선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 및 개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 자를 결정하여야 함.
 -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원칙
 - ※ 수의계약은 지자체 조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계약 가능(일반 건설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2천만원 이하.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과 계약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등)

○ 시행업체의 자격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업체는 농정원에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로 인증한 업체 및 컨설턴트에 한 함(붙임 4 참조)
 - ※ <u>사업수행 한도 : 업체별 최대 30개소, 컨설턴트별 최대 5개소까지만 수행하여야 하며,</u> 지역 법인이 합병된 경우 최대 50개소 까지 수행 가능
 - ※ 사업수행 한도 초과 수행, 자부담 대납 등 보조금 부당사용에 관계된 업체 및 현장 모니터링(고객만족도조사 등) 결과 최하위권에 속하는 업체 등은 배제
- 건축물(육묘장 포함)이 포함되었을 경우 시행업체의 자격
 -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자격업체
 -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 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참여 제한 가능
 -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사업시행 기준
-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 사업자가 농협조직인 경우에는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경제지주)와 협의하여야 함
 - * 비 농협조직은 가급적 전문기관의 자문을 참고하여야 함
 -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다만,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 성능시험(사일로 형태의 건조·저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 가공시설현대화 및 저온저장시설공사 완료 후에는 사업자 주관으로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 시설설치(공사완료) →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잔금) 지급
- 입찰공고 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긴급입찰(7 ~ 40일 → 5일)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입찰대행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영체의 자체 입찰 허용으로 신속한 입찰 및 예산낭비 최소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 행기준. 5. 민간자본이전 참고)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및 수확기 이전 조기완공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도 시행업체(시공 및 납품 등) 선정을 위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가능. 다만,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실시하여야 함

지자체(시・군)

-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도에 제출(12.19.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를 시·도에 제출(12.19.까지)
-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시·도에 제출
-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분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 라도 준공검사 가능

지자체(시・도)

- 자부담 확보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2.26.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2.26.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제출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15.까지)
- 사전준비상황(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시·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지자체(시・도)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10.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20.까지)
-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12.24.까지)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5.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25.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부결정 조건 이외에도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업 대상자에게 교부결정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
- 기본규정 제56조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 적극행정을 통한 집행율 제고 및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등을 위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 교육·컨설팅지원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선금 50%를 의무적으로 지급

$-\ll$ 선금 지급 활성화기준 \gg -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	
게 약급 백의 40%	20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 조치사항
- 선금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의 선금집행은 지양
- 선금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9호, '18.7.9)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 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가능함
-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 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 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 집행한 국고 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사 업 자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12.31.까지)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생산비 절감율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는 등 경영장부를 기록·보관해야함
- 사업대상자 향후 3년 내 타작물 재배 면적 추가 50ha(조사료 100ha)이상 확대 예시) 1년차 20ha, 2년차 20ha, 3년차 10ha 이상 의무 부여
- * 공동경영면적(배후면적)은 최소 50~100ha 이상으로 확대의무 부여
- *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은 예외(시도별 3.000ha 미만 예외)
- 쌀로 회귀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의무 부여(붙임 서약서 참조)
- * 5년간 유지 의무 위반시 보조금 회수 및 지원제한 대상 관리
- 공동경영 면적 대비 1년차에는 15% 이상, 2년차에는 30% 이상 3년차에는 50%이 상 논 타작물 신청 의무 이행(붙임 확약서 참조)
- 매년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추가 지원 및 지원 제한
- * 추가지원 : 논타작물 50ha 확대 조기 달성 시, 시설·장비 추가 지원 및 다각화 지원
- * 논 타작물 이행 미달성 시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교육·컨설팅 지원 중지, 사업다각화 신청 제한 ,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중지 등

5. 이행점검 및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단계

≪사업추진 등 이행점검≫

- 농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등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3~5월, 7~9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시·도, 농정원,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등
 - * 농정원은 교육ㆍ컨설팅업체 인증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사업비 정산≫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0일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다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 받은 후 제출
 - * 보조금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 처리 시,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를 별도 반납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정산시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반납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을 확정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장·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까지 변동현황을 제출해야함
 - * (중요재산)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 및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현황이 공시되어야 함.
 -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사후 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워브 메칭기즈		
중요세신	부터	까지	처분 제한기준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준공일부터	10년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 (육묘장, 저장고, 창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홍보관, 작업장,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가공·도정 <u>공장</u> 등)			ㅇ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		
∘ 부동산의 종물(건물 내_	<u>준공일부터</u>	<u> 7년간</u>	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기계설비 등)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조 이 게 시	사후관리기간		된 비 제하기즈		
중요재산	부터	까지	처분 제한기준		
• 무인항공방제기	구입일부터	6년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보조금법 제35		
∘ <u>주요 기계·장비</u>	구입일부터	5년간	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 광역방제기, 콤바인,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		
트렉터, 차량 등			* 재산처분 기준 : 기본규정 제77		
			조제2항		

-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완료해야 함
 - * 특히, 특정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설비 등은 중점 관리 필요

─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ㅇㅇㅇ이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사업대상자는 기본규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해서 농림 축산식품사업안내문 비치 등 시·군의 관리책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 시장·군수는 기본규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일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최대 5년간)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교육·컨설팅 최대 5년간 연속 지원, 공동영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 정부보급종 사전주문을 통한 우선 공급
- 향후, 교육·컨설팅 지원 및 사업다각화 지원에 대한 연차평가를 개발, 개별 경영체 지원에 반영(2021년 사업신청자부터 적용)

2. 2021년 사업신청 등 공지사항

○ 2021년 사업신청 세부사항은 별도의 공고('20.1월)를 참조하며,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0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

3. 참고서식

- <붙임 1> 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산출내역
- <붙임 2>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붙임 3>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붙임 4> 교육·컨설팅 수행업체 인증제도
- [별지 제1호 서식]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들녘경영체육성 교육 · 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산출내역

- 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 대상 사업 의무량 검토(안)
 - (교육) 리더/회원농가 대상 각 3회 + 선진지 견학 1회(리더/회원농가 대상 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 4/4분기 교육·컨설팅 성과보고 및 차년도 추진계획 공유 등 보고회 성격의 교육 필수 실시
 - (컨설팅) 개소 당 10회(8개월 내외), 회당 6시간
 - * 조직진단. 농가조직화 계획 수립 등 전체 컨설팅 내용의 70% 내외 7월까지 완료
- 예산 산출내역(안): 1개소당 30,000천원(보조 90%, 자부담 10%)
 - 교육비 15,100천원(50.3%) + 컨설팅 14,900천원(49.7%) = 30,000천원

< 들녘경영체 개소별 교육•컨설팅 예산내역(안) >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교육	- 핵심리더교육: 30명 × 3회 × 64,444원 ≒ 5,800,000원 - 회원농가교육: 100명 × 3회 × 15,333원 = 4,600,000원 - 선진지견학(1회): 4,700,000원 * 강사비, 원고료, 교재, 실습교육비 등 포함(참고1. 참고) * '17년 개발된 표준모델 활용	15,100
	<필수과정> ①(리더/ 17h) 들녘경영체 및 조직화 이해, 우수 들녘경 영체 벤치마킹, 리더 워크숍, 회원농가 관리방안, 운영규약 및 사업 계획 수립 등 ②(회원/ 3h) 들녘경영체 이해 및 운영규약 공유 등	
컨설팅	- 1개소, 8개월 수행 기준 * 컨설턴트 인건비, 운영비 등 포함(참고1. 참고) * 조직진단에 기반하여 기초(1단계)→심화(2단계)→고급(3단계) 단계 별 컨설팅 실시 * (1단계) 공감대 형성과 농가조직화→ (2단계) 조직화촉진 사업수 행→ (3단계) 신사업 추진전략 수립	14,900
	합계	30,000

* 교육과 컨설팅 간 사업비 전배 금지(산출내역은 사업의무량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참고 1>

< 들녘경영체 개소별 교육 • 컨설팅 세부 산출내역(안) >

	구분	세부산출내역	예산(원)
	강의비	- (리더) 200,000원 × 1명 × 3회 × 6시간 = 3,600,000 - (회원) 200,000원 × 1명 × 3회 × 3시간 = 1,800,000 * 퍼실리테이터, 원고료 등 포함	5,400,000
교육	선진지 견학 (1박2일)	- (강의비) 200,000원 × 1명 × 7시간 = 1,400,000 * 1일차 5h, 2일차 2h 기준(퍼실리테이터, 원고료 등 포함) - (숙박비) 30,000원 × 30명 × 1일= 900,000 - (식비/다과) 10,000원 × 30명 × 4식 = 1,200,000 - (차량, 시설임차비) 600,000원 × 2일 = 1,200,000 ※ 선진지 견학은 리더/회원농가 교육과 통합 추진 가능	4,700,000
₩ -1	교재	- (리더) 10,000원 × 3회 × 30부 = 900,000 - (회원) 5,000원 × 3회 × 100부 = 1,500,000	2,400,000
	식비	- (리더/회원) 10,000원 × 200명 × 1식 * 다과 포함	2,000,000
	실습교육비	- (리더/회원) 100,000원 × 6회 * 문구용품, 플랜카드 등	600,000
	교육 소계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15,100,000
	인건비	(책임급) 6,338,646원 × 8개월 × 1명 × 15% * 총 10회, 회당 6시간 기준	7,606,375
	인선미 	(연구원) 4,860,388원 × 8개월 × 1명 × 15% * 총 10회, 회당 6시간 기준	5,832,465
컨설팅	교통비	50,000원 × 2명 × 10회	1,000,000
	책자제작	(보고서 등) 15,372원 × 30부	461,160
	컨설팅 소	계(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14,900,000
총 계			30,000,000

※ <참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18년)

등급	2017년 월 임금	2017년 월 임금 2018년 월 일금			
<u> </u>	(용역 참여율, 50%)	용역 참여율(50%)	용역 참여율(100%)		
책임연구원	월 3,110,229원	월 3,169,323원	월 6,338,646원		
 연구원	월 2,384,881원	월 2,430,194원	월 4,860,388원		
연구보조원	월 1,594,213원	월 1,624,503원	월 3,249,006원		
보조원	월 1,195,701원	월 1,218,419원	월 2,436,838원		

<참고 2>

< 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표준모델(예시) >

1. 리더농가 대상 교육프로그램(예)

구분	과정명	교육내용	대상	시간	강사	교육 방법
	< 왜, 지금 들녘경영체인가?> 쌀 산업 발전과 물록경영체의시대적역할	- 쌀 산업 여건 - 들녘경영체 육성 필요성 - 들녘경영체 육성 과제 - 조직화의 시대적 중요성	리더/ 참여 농가	2.0hr	외부 강사	강의
리더 농가 1회차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들녘경영체 현황분석 결과설명 조직진단 결과 공유 조직화 강화를 위한 우리 들녘경 영체의 과제와 해결방안 논의 및 전략수립 * 퍼실리테이터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 	리더/참여 농가	4.0hr	외부 강사	참여 학습
선전지 견학	<우수 들녘경영체 벤치마킹>	-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발표 및 현장견학 - 현장 간담회를 통한 조직운영 노하우 상호공유 및 질의 응답	리더농가	5.0hr	내부 외부 강사 (간설턴)	견학 (참 야남)
인국 및 리더 워크숍	< 리더 워크숍> 우리 들녘경영체 돌아보기	-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소감 공유, 우리 경영제의 조작화 수준과 특장점 발견 * 퍼실리테이터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	리더/참여 농가	2.0hr	외부 강사	참여 학습
리더 농가 2회차	<우리 들녘경영체의 운영 틀 잡기>	- 타 들녘경영체 포함 우수 운영사례 공유 및 핵심성공 요인 도출 - 우리 경영체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전략 수립 - 참여농가 효율적 관리방안 - 조직체계 수립, 조직 운영 방안 마련 - 운영규약 및 사업계획 수립 * 각 과제에 대해서 퍼실리테 이터를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논의, 전략수립)	리더 농가	4.0hr	외부 강사	참여 학습
	I	계	ı	17.0hr		

2. 참여농가 대상 교육프로그램(예)

구분	과정명	교육내용	대상	시간	강사
	< 왜, 지금 들녘경영체인가?> 쌀 산업 발전과 들녘경영체의 시대적 역할	- 쌀 산업 여건 - 들녘경영체 육성 필요성 - 들녘경영체 육성 과제 - 조직화의 시대적 중요성	리더/ 참여 농가	1.0hr	외부강사
회원 농가 교육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하기>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들녘경영체 현황분석 결과설명 - 조직진단 결과 공유 - 조직화 강화를 위한 우리 들녘경영체의 과제와 해결방안 논의 및 전략수립	리더/ 참여 농가	1.0hr	컨설턴트 (내부강사)
	< 나와 우리, 들녘경영체 발전을 위한 약속 지키기>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과 운영규약 이해	- 조직운영 체계도 설명 - 들녘경영체 운영규약 설명 - 질의 응답 * 리더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조직체계, 운영규약 등을 공유	리더/ 참여 농가	1.0hr	컨설턴트 (내부강사)
	1			3hr	

3. 교육컨설팅 과제별 세부과업 내용

구분	과제명	세부과업	비고
		01. 들녘경영체 조직현황 진단하기	
1	들녘경영체 조직현황진단	02. 이해관계자 면담 조사하기	1년차 필수
	·	03. 교육컨설팅 추진방향 설정하기	
		01. 조직화 수준 진단하기	
2	농가조직화	02. 참여농가 관리하기	1년차
2	전략수립	03. 조직운영 체계도 작성하기	필수
		04. 들녘경영체 운영규약 작성하기	
		01. 참여농가 교육계획 수립하기	
	농가조직화	02. 참여농가 교육 실행하기	1.2.3
3	교육실행	03. 참여농가 의식 조사하기	년차 필수
		04.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하기	
		01. 공동경영 사업계획 수립하기	
	조직화촉진	02. 고품질 쌀 및 농산물 생산계획 수립하기	1년차
4	사업전략수립	03. 자금 운영계획 수립하기	필수
		04. 조직화촉진 사업신청서 작성하기	
		01. 공동사업 확대전략 수립하기	
_	공동사업	02. 공동사업 운영계획 수립하기	2년차
5	활성화전략수립	03. 공동사업 참여농가 확보하기	필수
		04. 공동사업 추진성과 분석하기	
		01. 산업여건과 시장환경 분석하기	
	신사업	02. 들녘경영체 현황 분석하기	3년차
6	추진전략수립	03. 신사업 추진전략 수립하기	필수
		04. 신사업 추진계획 작성하기	
7	사업성과분석 및	01. 당해연도 사업성과 분석하기	2.3차년차
7	사업계획수립	02.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하기	팔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d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	업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까?		
	식량작물 공동(들녘) 경영체	집단화된 농지가 50ha 이상입니까?(잡곡 전문은 10ha 또는 50ha)		
		참여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25명 이상입니까?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였습니까?		
	인정기준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식량산업 종합계획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입니까? (경과규정): 시설·장비는 '20년 신청자, 교육·컨설팅은 '21년 신청자부터 적		
	정부지원 RPC 연계	쌀은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고 있습니까? (정부지원 RPC가 아닌 경우) 농업법인으로 연간 쌀 1,000톤 이상 가공실적이 있는 도정공장을 자체보유하거나, 그러한 도정공장과 계약재배 후 출하하고 있습니까?		
		조합원 5인(시설·장비는 10인, 다각화는 1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입니까?(잡곡 전문은 다각화만 10명)		
지원 자격		총 출자액은 (교육·컨설팅) 1억원, (시설·장비) 2억원, (다각화) 3억원 이상입니까? (잡곡 전문은 다각화만 2억원)		
및 요건	농업법인 요건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비 농협조직)	설립 후 운영실적이 (교육·컨설팅) 1년, (시설·장비) 2년, (다각화) 3년 이상입니까?		
	0 (12-1)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습니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까?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세부 사업별	(시설·장비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하였습니까? ('19년에 처음 실시하는 경우 상반기에 70% 이상 추진이 가능한가요?)		
	자격 및	(사업다각화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하였습니까? ('19년에 처음 실시하는 경우 상반기에 70% 이상 추진이 가능한가요?)		
	요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교육·컨설팅을 다른 유사 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3.43	1-1	총 지원횟수가 (교육·컨설팅) 5회, (시설·장비) 3회, (다각화) 2회 이내에서 지원 받으려 하십니까?(최근 10년간)		
지원	제한 기준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를 최종 지원년도 이후 2년이 경과하였나요? ('17년 사업자('16년 신청자)부터 적용('17년 사업자는 '18~'19년에는 지원 제한,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20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은 전년도에 신청하므로 '19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사업신청 후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18년 신청자(포기는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지원 제한)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시·군과 사업자 각각 확인)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	X	X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		
	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20년~'21년까지 신청 제한)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된 적이 있습니까?	\setminus	
	('20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20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1~'23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mid X \mid$	
	'20~'22년까지 제한])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		
	('19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9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20년~'24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 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지원 RPC 등과 체결한 출하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벼 건조·저장 시설 및 쌀 도정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시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의 최대 30%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숙박시설 및 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쌀 관련 생산·유통기반 구축은 기존 시설·장비 지원, 쌀 적정 생산 및 RPC 중심의 통합·규모화를 고려하여 총사업비의 최대 30%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		
	습니까?		
10000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은 각각 총사업비의 최소 5% ~ 최대 10% 한도에서 수립하였습니까?		
사업다각화	다각화에 수반되는 전문 교육·컨설팅과 공동영농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을 포함하여 수립하였는가?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한 회계· 법무법인 자문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마케팅을 위한 식량작물공동 (들녘)경영체별 브랜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항 목	내 용	예	애오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유류비, 종자대 등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간이설계를 실시하였습니까?		
	간이설계도를 최소 3종 이상 검토하였습니까?		
	실시설계가 9월말까지 가능합니까?		
	토목공사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가공시설에 대해서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 되었습니까?		
	입·출고시설은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건조시설은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건축물 및 관련	저장시설은 단열처리 기준을 충족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시설·장비 (육묘장 포함)	자동제어시설은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검토되 었습니까?		
,	품질검사장비는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검토하였습니까?		
	저온저장시설은 단열처리와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연중 15℃ 이하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의 구조로 검토되었습니까?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농협은 가등기 완료)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나요?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나요?		
	부지 성토 및 다지기 공사가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관련 인허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관련 인허가에 금지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결과를 받았나요?		
농정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지방비	지방비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 방침(예산부서 협조)을 받았나요?		
(다각화만 해당)	지방의원 대상 설명 및 지방의회에 사전 협조를 실시하였나요?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구비서류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까?		

항 목	내 용	ন্ত	아니오
	1. 신청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5. 납세증명서(구. 국세완납증명서)		
	6. 지방세 납세증명서		
	7.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참여 의제)		
	8. 출자액(자본금) 사용내역서(농협 제외)		
	9. 출자액(자본금) 통장 입출금 내역서 사본(농협 제외)		
	10.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11.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12.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가설 건축물은 신고서 등, 농협 제외)		
	13. 경영체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등 목록과 사진		
	14. 공동영농작업단 구성 및 운영현황		
	15. 공동영농일지(최근 2년간)		
	16. 공동육묘장 운영메뉴얼		
	17. 공동육묘일지(최근 2년간)		
	18. 공동방제기 운영메뉴얼		
	19. 공동방제일지(최근 2년간)		
	20. 계약재배 약정서(최근 2년간)		
	21. 농가별 영농일지(최근 2년간)		
	22. 정부지원 RPC 등과의 출하약정서(자체 도정시설 보유시 쌀 가공실적이 1,000톤 이상임을 확인하는 서류)		
	23. 정부지원 RPC 등에 출하내역서(최근 2년간)		
	24. 교육 이수·확인증		
	25. 참여농가 명부		
	26. 공동영농 농지현황		
	27. 들녘 항공사진(면 단위 축적기준)		
	28. 논 타작물 생산현황(지원금 지급내역 등)		
	29. 동계 답리작 생산현황(직불금 지급내역 등)		
	30.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류실적(협회 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31. 내부 운영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록(최근 2년간)		
	32.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		
	33. 수익환원 내역(최근 2년간)		

항 목	내 용	예	아나오
	34.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농협 제외)		
	35. 표준생산메뉴얼		
	36. 농약안전사용기준 매뉴얼		
	37. 생산관리자 지정 및 운영현황(최근 2년간)		
	38. 계약재배 약정 현황(최근 2년간)		
	39. 재해보험 가입현황		
	40.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41. 경영일지(수입·지출 관리내역서)(최근 2년간)		
	42.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 또는 납품 실적		
	43. GAP 생산단지 지정서		
	44. 친환경인증서		
	45.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교육 수료증		
	46.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47.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48. 비교 견적서(최소 3개소 이상, 교육·컨설팅은 제외)		
	49. (건축물 관련)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및 전경사진)		
	50. (건축물 관련)지적도		
	51. (건축물 관련)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52. (건축물 관련)토지이용계획확인원		
	53. (건축물 관련)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54. (건축물 관련)기존 건축물대장(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55. (건축물 관련)간이 설계도(최소 3종 이상)		
	56. (건축물 관련)조감도		
	57. (지자체 준비서류)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58. (지자체 준비서류)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0000		1 -11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다만, 해당사항 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구분 : 교육·컨설팅 지원(서면평가, 우선순위 선정)

	,	건 글 8 기 전(기 단행기, 기 전반기 연행)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0	○ 공동영농 발전정도 - 공동영농작업 조직체 구성 여부(5점), 수행작업 종류*(개당 1점) * ① 공동육묘, ② 공동이앙, ③ 공동방제, ④ 공동수확, ⑤ 공동출하
1. 운영	10	○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컨설팅 참여 실적 - 대표 또는 관리자의 '18~'19년 농식품부 지정교육* 이수(5점)와 참여농가 교육 이수(5점)**를 구분, 해당사항* 입증 시 점수 합산 * '18~'19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설명회·워크숍,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리더 교육(농정원 시행) 중 1회 이상 참석 시 5점 인정 ** 인정되는 교육의 건 별 '참여 농업인수/전체 농업인 수 × 교육 일수'의 총합, (배점기준) 1~2일 미만 3점, 2~3일 미만 4점, 3일 이상 5점
현황	4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 1.5ha 미만(4점), 1.5∼2.0ha 미만(3점), 2ha 이상(2점), 2ha 이상(1점)
(32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2점), 10~15%(3점), 15%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1점), 30% 이상(2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2	○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1점씩 부여(최대 2점)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타 식량 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 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 증 시 점수 합산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2. 운영 형태 (26점)	7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 평가 제외) - 해당사항 [*] 이 있어 입증 시 7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 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입증 여부('농협' 평 가 제외)
	(6.5)	- 5인 이상(1점), 6인(2점), 7인(3점), 8~9인(4점), 10~14인(5점), 15인 이상(6점)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6.5점' 농협에 부여
	3	O 공동경영농지의 집단화 정도 - 2개 이하 단지로 구성(3점), 2개 초과 단지로 구성(1점)

2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3. 품질 향상 및 경영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건당 2점 부여, 점수 합산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 또는 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농협·RPC·경영체의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전금, 지자체 등의 보조사업 우선선정 등) 여부
	안정 노력 (15점)	5	○ RPC 등과 단지 내 단일품종 계약재배 비율 - 입증이 가능한 공동경영면적 대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계약재배 면적 * ① 10~20% 미만 1점, ② 20~30% 미만 2점, ③ 30~40% 미만 3점, ④ 40~50% 미만 4점, ⑤ 50% 이상 5점
		4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이상(2점), 50% 이상(4점)
4. 지자체 평가	4-1. 논 타작물 재배 참여 (5점)	5	O '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실적 등 쌀 수급안정 기여 - 공동경작 면적 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비율로 산출('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면적, 농지매입사업, 간척지 임대 조건 등으로 미참여·휴경 면적 포함) * 계산식: 신청비율 ÷ 0.4 × 0.1점(0.4% 당 0.1점, 최대 5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4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4=3.2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 국가·지자체의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적정 여부
	4-2.	3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1점 부여, 점수 합산 * ① 재산의 운영규정 등 제정 여부, ② 재산에 안내 '표지' 부착 여부, ③ 시설·장비의 작업 및 운용 일지 작성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및 제73조 참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보조사업 지원이력이 없을 시 일괄 1.5점 부여
		3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따라 개별 1점 부여, 점수 합산 ★ ① 수입, ② 지출, ③ 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2	○ 보조사업 대상자 적합성(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 기 보조사업의 실적, 성과, 수익배분, 사업연계 등을 고려 자체판단
5. 가점 (6점)		(6)	O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6.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여 예정
	합계	100점 (6점)	

□ 구분 : 시설·장비 지원(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4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 1.5ha 미만(4점), 1.5~2.0ha 미만(3점), 2ha 이상(2점), 2ha 이상(1점)
1. 운영현황 (14정)	<u>6</u>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2점), 10~15%(3점), 15%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 (1점), 30% 이상(2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14점)	4	○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점씩 부여(최대 4점)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u>4</u>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4	O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2. 운영형태 (20점)	6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평가 제외)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6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 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 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식량 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여부('농협' 평가 제외) - 10인 이상(1점), 11인(2점), 12인(3점), 13인(4점), 14인(5점), 15인 이상(6점)
	(6)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6점' 농협에 부여
3. 품질향상 및 경영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건당 2점씩 부여, 점수 합산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농협·RPC·경영체의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전금, 지자체 등의 보조사업 우선선정 등) 여부
옷 경 8 안정노력 (16점)	6	○ RPC 등과 단지 내 단일품종 계약재배 비율 - 입증이 가능한 공동경영면적 대비 단일품종 계약재배 면적 * 10% 미만 1점, 10~20% 2점, 20~30% 3점, 30~40% 4점, 40~50% 5점, 50% 이상 6점
	4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미만 1점, 30~40% 2점, 40~50% 3점, 50% 이상 4점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시설·장비 지원여건	8	○ 신청 시설·장비의 공동영농활용 적합성 - 타작물(밭작물) 전환 전용장비(8점), 전용+겸용장비(6점), 겸용 장비(4점),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장비(2점)
	(10점)	2	○ 공동경영농지의 집단화 정도 - 2개 이하 단지로 구성(2점), 2개 초과 단지로 구성(1점)
	5-1. 논타작물 재배참여 (10점)	10	○ '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실적 등 쌀 수급안정 기여 - 공동경작 면적 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비율로 산출('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면적, 농지매입사업, 간척지 임대조건 등으로 미참여·휴경 면적 포함) * 계산식: 신청비율 ÷ 0.2 × 0.1점(0.2% 당 0.1점, 최대 10점)
5. 지 자 체	5-2. 자체평가 (16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6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6=4.8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평 가		6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대해 개별 2점씩 부여, 점수 합산 * 신청단체의 최근 1년간 ① 수입, ② 지출, ③ 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4	○ 보조사업 대상자 적합성 (매우우수: 4점,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미흡 0점) - 기 보조사업 수혜 정도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 실시 * 보조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 최근 5년간·최대 3회까지 동일한 내용 및 대상의 자본보조금 지원조건 내에서 판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4점)	4	○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 여부 - 수립・선정(4점), 수립・미선정(2점), 수립 중(1점), 미수립(0점)
7. 가점 (8점)		(8)	O 해당사항이 있어 입중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④ 대표 또는 관리자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 교육(농정원 시행) 수료 여부
8.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여 예정
	합계	100점 (8점)	

□ 구분 : 시설·장비 지원(현장평가,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식량작물공동 (들녘)경영체 역량평가 (30점)	2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이해, 역량, 실적, 성과 등에 대한 현장평가 - 5개 요소*(개별 4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및 사업의 이해도(공동영농 조직 구성·운영, 논 타작물·답리작, 고품질 생산 등 농정시책에 대한 입장) ②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공동영농활동 내용 및 추진 의지(농기계 공동이용 등 공동영농작업 형태 및 실적, 규모 대비활동정도) ③ 교육·컨설팅 추진 실태 및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접목 성과 ④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이후 성과 창출 여부 ⑤ 생산비 기록 등 경영일지 작성 및 비치 여부
	1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진 역량 (매우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5점, 미흡: 2점, 매우미흡 0점) - 식량산업 여건변화에 대한 운영진 면접심사로 평가
2.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10	○ 국가·지자체의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적정 여부 - 3개 요소(개별 3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모두 해당 시 10점 부여 * ① 재산의 운영규정 등 제정 여부, ② 재산에 안내 '표지' 부착 여부, ③ 시설·장비의 작업 및 운용 일지 작성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및 제73조 참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보조사업 지원이력이 없을 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소유의 재산관리 적정성 여부로 대체, 해당없음 시 5점 부여
(30점)	2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신청 시설·장비의 지원대상으로 적절성 - 타작물 전환 전용장비, 전용+겸용장비, 겸용장비,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장비 여부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필요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
3.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40점)	4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발전 가능성 평가 - 3개 요소*(개별 13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모두 해당 시 <u>40점</u> 부여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②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쌀 생산이외의 논타작물 전환, 가공·체험·관광 등 사업의 다각화 여건 및 계획) ③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노력 실행여부(조직화 노력, 들녘단위 농산물 판매촉진 활동 등)
4. 평가대상 제외		○ 현장평가 과정에서 아래 시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 즉시제외 * ①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동농업 경영 실적이 없는 등 지원자격 및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거나, 그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거짓 신청 사실이 확인된 경우 (좋은 평가를 위한 지원품목 거짓신청 포함)
합계	100점	

□ 구분 : 사업다각화 지원(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4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 1.5ha 미만(<u>4점</u>), 1.5~2.0ha 미만(<u>3점</u>), 2ha 이상(<u>2점</u>), 2ha 이상(<u>1점</u>)
1. 운영현황 (14점)	<u>6</u>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2점), 10~15%(3점), 15%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 (1점), 30% 이상(2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4	○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점씩 부여(최대 4점)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식량 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u>4</u>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2	O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2. 운영형태 (20점)	4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 평가 제외)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4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 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 업료 할인
	<u>6</u>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여부('농협'평가 제외) - 15인 이상(1점), 16~17인(2점), 18~19인(3점), 20~21인(4점), 21~22인(5점), 23인 이상(6점)
	(5)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5점' 농협에 부여
	4	○ 수입·지출 등 결산의 투명성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개 요소(개별 2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 ① 수입·지출의 기록정리 제출, ② 이사회 등 참여농가 보고

평가항목 배			배점기준
3. 품질향상 및 경영 안정노력 (16점)		6	○ 쌀 수급안정 등을 고려한 쌀 대체작물(콩·감자 등), 조사료 등 타작물 생산구축 여부 - 신청당시 쌀 대체작물을 재배 중에 있고 확대 계획을 바탕으로 신청한 사업계획인 경우
		6	O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개당 2점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농협·RPC·경영체의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전금, 지자체 등의 보조사업 우선선정 등) 여부
		4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기입면적 비율 30% 미만 1점, 30~40% 2점, 40~50% 3점, 50% 이상 4점
4. 기	/1074\		○ '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실적 등 쌀 수급안정 기여 - 공동경작 면적 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비율로 산출(<u>'19년</u>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면적, 농지매입사업, 간척지 임대조건 등으로 미참여·휴경 면적 포함) * 계산식: 신청비율 ÷ 0.35 × 0.1점(0.35% 당 0.1점, 최대 10점)
자 체 평 가	4-2 . 자체평가	8	O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8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8=6.4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14점)	6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대해 개별 2점 부여, 점수 합산 * 신청단체의 최근 1년간 ①수입, ②지출, ③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5. 지원 적합성	8	○ 신청 시설·장비 등의 적합성 - 타작물 관련 전용(8점), 전용+겸용(6점), 겸용(4점),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2점)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8점)	8	O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 여부 - 수립·선정(8점), 수립·미선정(5점), 수립 중(2점), 미수립(0점)
7. 가점 (8점)		(8)	O 해당사항이 있어 입중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④ 대표 또는 관리자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 교육(농정원 시행) 수료 여부
9.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여 예정
	합계	100점 (8점)	

□ 구분 : 사업다각화 지원(현장 및 발표평가,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역량 및 외부자원의 반영 - 조직·인력구성 등 내부여건에 대한 고려와 특산물·어메니 티 등 지역자원의 연계성을 반영한 계획 여부
1. 사업추진 의지·역량 여건(40점)	1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추진 실적 및 계획 우수성 - 조직화, 다각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적 및 계획
, _(_,	10	구성원 참여정도계획수립 시 조합원 등 다수의 참여농업인 의견 반영
	10	○ 계획 수립 시 시·군의 농정정책의 반영 등 지자체 참여
	20	어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연차별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실제운영 가능성
2. 사업계획의 정책부합성 및 충실도 (40점)	10	○ 사업계획서상 사업다각화를 통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의 비전, 성과목표·계획의 적정성 - 사업다각화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명확한 목표 설정
	10	○ 참여농가 및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
3. 지원 적합성 10		 ○ 신청 시설·장비 등의 적합성 - 타작물 관련 전용(8점), 전용+겸용(6점), 겸용(4점), 벼(총체 벼 제외) 재배 전용(2점), 기존 시설·장비와의 연계성(2점 추가)
4.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10점)	10	O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매우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매우미흡 2점)
5. 평가대상 제외		○ 발표평가 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 즉시제외 * ①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동농 업경영 실적이 없는 등 지원자격 및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 되거나, 그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거짓 신청 사실이 확인 된 경우(평가만을 위해 거짓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포함)
합계	100 점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평가표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평가표

(시도)	(시군)	
(단지명)	(경영체명)	

입력 기준 : ① ~ ③, ⑥은 '19년도 실적 입력, ⑤-1 ~ ⑤-3는 '22년 계획 입력 ⑦은 지정, 미지정으로 입력, ⑧, ⑨는 지자체에서 평가 후 입력

평가지표	배점	관련 실적	평가점수	비고
① 타작물 재배면적(최소 5ha 이상)	1ha당 1점			
② 공동영농면적(최소 10ha 이상)	1ha당 0.5점			
③ 참여 농가수(최소 15명 이상)	1ha당 0.4점			
④ 단지 집적도 (배후단지내타작물재배비율)	10%당 1점			
⑤-1. 향후 확대계획(①타작물) (추가 50ha, 최소 55ha 이상)	1ha당 0.5점			
⑤-2. 향후 확대계획(②공동면적) (추가 50ha, 최소 60ha 이상)	1ha당 0.25점			
⑤-3. 향후 확대계획(③농가수)	1명당 0.2점			
⑤-4. 향후 확대계획(④집적도)	10%당 0.5점			
⑥ 배후단지 규모	1ha당 0.1점			
⑦ 들녘경영체 지정 여부	30			지정은 30점, 미지정은 0점
⑧ 목표 달성 가능성(추가 50ha)	15			A등급(15점) ~ E등급(3점)
⑨ 성공 가능성(5년간 유지)	15			A등급(15점) ~ E등급(3점)
합계			172	

교육·컨설팅 수행업체 인증제도

I. 추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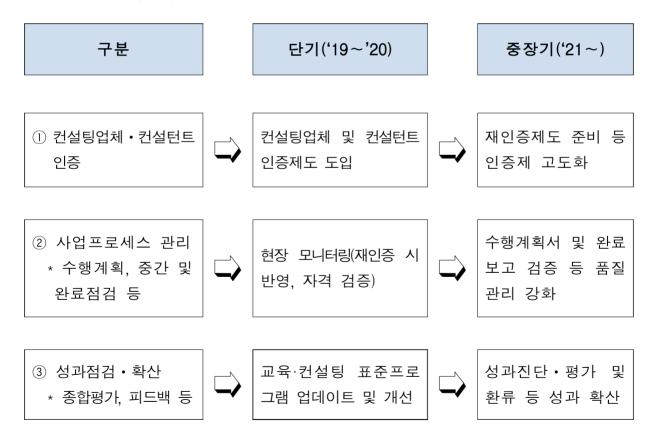
□ 추진목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조직화 촉진을 위해 사업 이해와 조직화 컨설팅 역량을 갖춘 컨설팅업체를 인증·활용하여 교육컨설팅 사업 내실화·활성화 도모
- □ 주최/주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추진방향

- O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업체 인증기준 설정 시 농업경영컨설팅 등 타 사업을 참고하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
- 컨설팅업체 기본 자격요건을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발표심사 시조직화, 공동농업경영 이해, 수행역량 등 심층적인 심사 실시
- 서면·현장평가, 발표심사, 최종인증심의 등 전문가를 활용한 단계별 심사를 통해 조직화에 대한 이해와 수행역량을 갖춘 컨설팅업체 인증
- O 컨설턴트는 컨설팅업체 인증 시 자격수준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심사
- 컨설턴트 검증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컨설턴트가 업체당 최소 2인 이상(인증 신청자격)이어야 함
- O 인증제도 관련 컨설팅업체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 의견 수렴과 제도 설명 등을 통해 인증제의 적용성과 수용성 제고
 - 공고 이후 컨설팅업체 대상 인증제도 설명을 위한 설명회 실시
- 인증컨설팅업체는 농정원이 주관하는 설명회·워크숍(4시간 이상) 의무 참여
- O 인증업체 풀을 시·도, 시·군·구와 선정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제공하여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업체 매칭 시 활용토록 의무화
 - * '19년부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수행업체로 인증한 업체 및 전문컨설턴트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는 서면·현장평가를 제외하고, 조직화 및 공동농업 경영에 대한 이해, 수행역량 등을 컨설팅업체 발표를 통해 심사하여 최종인 증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 심사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신청 필수서류 제출)하여 업체 부담 완화
- O 컨설팅 품질 향상 및 적정한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업체 및 컨설턴트별 사업량 제한
- * 업체별 30개소(통합법인 50개소). 컨설턴트별 5개소 이내 등
- O 인증은 매년 운영하되,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4분기 실시
- O 재인증은 2년마다 실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교육·컨설팅 품질 제고
 - * 업체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인증 평가 시 결과 반영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추진방안 >



* 예산·인력 등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단기·중장기 과제를 구분, '19년도 사업에는 컨설팅업체 인증 및 컨설턴트 검증을 우선 적용('18년 인증 실시)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대상

- O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신규/재인증)
 - * 신규인증 후 2년이 경과하여 인증이 만료된 업체는 재인증심사 실시

□ 추진절차

- O 공고·접수(10월) → 인증심사(서면·현장·발표, 11월) → 최종인증심의(12월)
 - ① 신규인증: $1차(서면 \cdot 현장평가) \rightarrow 2차(발표심사) \rightarrow 3차(최종인증심의)$
 - ② 재인증: 1차(서면평가) → 2차(최종인증심의)
 - * 사업설명회는 공고 이후 1주 내외 실시

□ 신청자격

- 신규인증: 신청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컨설팅업체
 - * 제출된 증빙자료를 근거로 심사 실시
 - ① (설립목적)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목적에 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② (업체업력) 회사업력 2년 이상으로 최근 2개년도('16~'17년) 결산을 마친 업체
 - ③ (보유인력) 전문 컨설턴트 2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 *분야별 최소요건(경영분야 1, 농업기술분야 1)을 충족하는 업체
 - * (전문컨설턴트) **컨설턴트 검증기준****을 획득한 **상근인력(4대보험 납입 근로자)**으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지원 컨설팅업체 인증계획'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경영분야 1인) 경영분야 전공자 및 해당 분야 컨설팅 경력자
 - (농업기술분야 1인) 농업기술분야 전공자 및 해당분야 컨설팅 경력자
 - ** 컨설턴트 검증기준: 컨설팅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학력 등을 종합심사하여 60점 이상인 자(60점 미만, 40점 이상일 경우는 컨설턴트 활동은 가능하나 전문 컨설턴트로는 인정 불가(일반컨설턴트))
 - ④ (수행실적) 최근 1년간 총 계약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의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전 산업분야 컨설팅 수행실적 모두 인정)
 - ⑤ (재무건전성)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필하거나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

- 재인증: 인증기간(2년)이 만료 예정인 컨설팅업체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지원 사업 수행업체 재인증은 '21년부터 적용('19년 신규인증업체 대상)
 - ① (인증만료) 인증기간 2년을 경과하여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업체
 - * 인증신청기간 내 재인증신청서(일체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지원사 업의 **컨설팅 수행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 심사방법

Ⅱ 신규인증

(1단계) 서면·현장평가

- 제출서류, 자격기준 등 필수사항 확인
- 정량·정성지표 서면 검증 및 부적격업체 제외
- 서면 적격업체 대상
 제출자료 현장 일치여부 등
 추가 검증

농정원·전문가

(2단계) 발표심사

- 컨설팅업체별 공개발표
- 조직화 이해 및 수행역량, CEO 의지, 사업역량 등 종합평가

농식품부·전문가

(3단계) 최종인증심의

• 전문가 최종 선정심사

 \sum

인증제도 개선방안논의 등

농식품부·전문가

○ (1단계)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인증평가(농정원·전문가)

 Σ

- 제출자료 토대로 기본요건 충족, 필수서류 제출여부, 충실성 등 종합평가
- 전문가, 농정원의 역할분담을 통해 심층평가(서면: 전문가 + 현장: 농정원)

<서면평가>

- 전문가를 통해 사업여건 및 조직안정성 등 기본 자격요건을 평가
 - * 수행실적, 매출액, 구성인원, 재무건전성, 제출자료의 신뢰성, 사업체계성 등 정량·정성 평가

- 농정원은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정랑지표를 사전검증하고, 전문가는 최종적으로 적격 여부를 종합평가
- 필수서류 미제출, 서면평가 정량 기준요건(60점 미만), 정성지표 미흡 등 자격 미달 시 탈락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서면 평가표 참조

<현장평가>

- 농정원 사업담당자는 서면평가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제출자료의 현장 일치 여부 등 추가 검증 및 현장평가
- 서면 제출자료와 불일치, 확인 불가 등 부적격 사안 발생 시 탈락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현장 평가표 참조

○ (2단계) 컨설팅업체 발표를 통한 인증심사(농식품부・전문가)

- 외부전문가를 활용, 발표심사 실시(적/부 평가)
- 조직화 및 공동농업경영에 대한 이해, 수행역량, 사업수행의지 등 정성지표 심사
 - *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는 서면·현장평가를 제외하고, 발표심사 실시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발표 심사표 참조

○ (3단계) 최종인증심의위원회(농식품부·전문가)

- (위원회구성) 농식품부, 관련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
- (심의내용) 인증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인증업체 확정
- (심의결과) 서면·현장 및 발표심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 인증

- < 최종 신규 인증 > -

- ① 서면·현장평가(60점, 보통 이상) → ② 발표심사(적/부) →
- ③ 최종인증심의위원회(최종 선정)

2 재인증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최종인증심의위원회

- 제출서류 확인
- 자격기준 등 필수사항 확인
- 정량지표 등 검증

농정원



- 전문가 최종 선정심사
 - 전문가·농식품부

○ (1단계) 서류점검을 통한 인증평가(농정원)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 인증업체 신청 서류의 전문성, 사업실적, 인력구성, 재무건전성 등 평가
 - * 필수서류 미제출, 서류평가 기준요건(60점) 등 자격 미달 시 인증대상 제외
- (2단계) 인증심의위원회(농식품부·전문가)
- (인증위원회 구성) 컨설팅 관련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 (심의내용) 인증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인증업체 확정

(수행실적) 인증기간(2년)동안 <u>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 실적이</u> <u>3건 미만인 경우</u> 인증취소

- (심사결과) 심사결과 **60점 이상** 인증(60점 미만 탈락)
- (현장 모니터링) 인증 기간('19~'20년) 중 업체별 1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 필수 실시(농식품부, 농정원)
- 현장 모니터링 결과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의 경우 재인증 최종심의 시 점수와 관계없이 재인증 자격 재검토

< 재인증 > ____

① 현장모니터링 → ② 서면 인증평가 → 인증심의위원회(적격 여부)

□ 컨설턴트 검증

서류 접수		심사 및 검증		결과 통보
컨설팅업체 인증심사 접수컨설턴트 검증 신청	\(\sigma\)	• 컨설턴트 검증(서면)	\square	선정 및 검증결과 통보
컨설팅업체 → 농정원		농정원		농정원 → 컨설팅업체

- 추진목적: 컨설팅업체 인증 시 소속 컨설턴트 검증을 실시, 전문 컨설턴트 발굴 및 풀 관리를 통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품질 제고
- **추진대상**: '19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인증 희망업체 소속 컨설턴트

○ 검증기준

- 컨설턴트는 컨설팅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로서 학력 및 경력, 컨설팅 실적 등을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검증
 - * **컨설팅 경력이 1년 미만인 자**는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없으나, **컨설팅 보조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에 참여가능한 컨설턴트는 최소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업체 인증 시 신청자격에서 인정되는 '전문컨설턴트' (최소 2인)는 60점 이상을 득한 자로 함
 - * 평가지표 및 기준 : 컨설팅 경력(40), 학력 및 자격(30), 컨설팅 실적(30)
- 검증은 컨설턴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반기별로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컨설턴트 채용, 이직, 기존 컨설턴트 이력 수정 등 소속 컨설턴트의 변경사항 발생 시 컨설턴트 검증 요청
- 컨설팅업체 재인증 시 신규 컨설턴트 참여 또는 기존 컨설턴트의 경력·실적 및 학력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증 요청(기존 컨설턴트의 경우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컨설턴트 명단과 재직 관련 서류 제출로 갈음)

□ 사후관리

O 인증기간 중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1회 이상)하여 사업 품질관리 및 개선

① 현장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 모니터링 점검 대상

및 세부기준 설정

- 인증업체 현장 점검단 구성(농정원·전문가)
- 현장 모니터링 실시

농정원(전문가)

② 현장점검 결과 통보 및 시정 요청

- 모니터링 점검 결과 인증업체 통보
- 부진·결격사항 발생업체 시정 요청 및 유예기간 부여

농정원

③ 조치결과 재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 시정조치 결과 확인점검
- 모니터링 결과보고(농정원)

 \sum

• 인증취소 등 최종 조치 (농식품부)

농식품부·농정원

- ① (현장 모니터링) 농정원은 현장 모니터링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모니터링 세부 기준을 설정,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컨설팅업체 점검
- * 예) 인증 조건 충족 여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매뉴얼' 활용 여부, 조직화 컨설팅 내용·방식의 적절성 등 기준 설정
- ② (시정 요청) 점검 결과 수행업체의 인증자격 미확보, 사업지침 위반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시정 요청 및 유예기간 부여
- ③ (결과 환류)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 점검하고, 농식품부는 결과보고에 따른 최종 조치 실시
- 농정원은 결격사항 발생업체 대상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인증 취소 등 최종 조치를 실시
 - * 시정사항의 중대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 점검 실시
 - * 국가보조금법 및 컨설팅 계약 위반사항,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O 교육·컨설팅 표준매뉴얼 활용방법 및 이해 제고 등을 위해 인증업체 소속 컨설턴트 교육을 실시(연 1회, 4시간 이상)
- 지자체·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컨설팅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O 모니터링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매뉴얼, 인증평가 지표의 지속적 개선·보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서

	<u>경영체명</u>			설립연	도			
	대표자명			교육·컨설	설팅	총 횟수	회	
신청인	연락처			기선 기비		총 금액	백만원	
	주소			<u>시설·장비</u> 지원 이력		지원 내용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에서 선택 기입					
	조직현황	공동농업경영체 출	들자자 수	<u>명</u> , 참	여농기	· - · · · · · · · · · · · · · · · · · ·	동경영면적 <u>ha</u>	
	연계조직	* RPC는 '연계된	' 조작', i	学RPC는 '	연계분	된 조직'과 'Ri	PC 모두 기입	
	(2020)년도	해당사업에 🗸 표/	시 및 사업	법기간(착수	· 예정	일~완료 예정	l일) 기재	
	جَ يامايا	계	국	- 비]		지방비	자부담	
	총사업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교육·컨설팅 지원	주요내용						
신청내역	(기간:)	사업규모	백만원					
	□ 시설·장비 지원	주요내용						
	(기간:)	사업규모					백만원	
	□ 사업다각화 지원	주요내용	વીયો) ન	·제맥주 제	조·체험	험 관련 컨설팅	및 시설 구축 등	
	(기간 :)	사업규모	사업비	(백년	만원),	, 사업기간	(년)	
사업대성	추산식품분야 재정 상자 선정기관 등여 반드시 □에 √	이 아래와 같이						
□ 사업]신청과 관련된 퉅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	용에 동의	비합니	니다.(필수)		
□ 사업	[신청과 관련된 퉅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	다.(^국	필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 1. 세부사업계획서 2. 평가 증빙자료 일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사 업 명 칭

수립 2000년 00월 00일

1차 수정 2000년 00월 00일

2차 수정 2000년 00월 00일

0000법인

목 차

I.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현황 00
п.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성과 00
ш.	공동농업경영 추진계획 …	00
IV.	사업다각화 추진계획	00
V.	사업비 확보계획	00
VI.	기대효과	00

I.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현황

1)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기본현황

경영체명			대표지	L		
연락처 			법인등록	번호		
주소			사업자등록	류번호		
<u>법인 설립일</u>			공동영농	개시일		
출자액(천원)			출자자 수	수(명)		
운영진 수(명)			참여농가	수(명)		
공동경영면적(ha)	논: ha 밭: ha		주요 생신	·품목		
주요 품종	벼: , 보리	:	, 밀 :	, 콩	: , 기타	:
	육묘장 : 동	m²	이앙기 :	대	파종기 :	대
시설ㆍ장비	광역방제기 :	대	무인헬기 :	대	드론 :	대
<u>보유현황</u>	트랙터 :	대	콤바인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u>시설·장비</u> 임대현황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가공품명		연간 생 <i>-</i>	산량	연간 핀	매액
자체 가공・유통현황				톤		백만원
				톤		백만원
	지원연도, 사일	<u> </u>			지원연도,	사업비
교육·컨설팅	주요내용		시설·장비		지원	<i>54</i>
지원 이력	지원연도, 사일	<u> </u>	지원 0	력	지원연도,	사업비
	주요내용				지원	<i>ξ 목</i>

^{*} 작성 단위는 공동농업경영체 단위로, 농업법인·농협조직 단위(운영주체)가 아님

2)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연계 RPC 기본현황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연간 가공량	<u>톤</u>	연간 판매액	<u>백만원</u>	주요 브랜드	

○ 계약재배현황

구분	계약재배 GA	GAP쌀	친환경쌀	매입량	계약재배 농가수(호)		
l E	면적(ha)	인증면적	인증면적	(톤)	농가조직체수	농가수	
전체							
식량작물공동							
(들녘)경영체							

- 3)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경영 현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목적 및 발전 방향(비전)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주요사업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구성현황

(단위: 천원, 명)

구분	1구좌 금액	총 출자액	총 출자지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인원 수	공동영농 활동자 수	영농 위탁 의뢰자 수
법인 결성시						
현재						
향후 계획						

* 주요출자자 현황(상위 10명)

(단위 : 천원)

출자자	출자액	출자자	출자액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재해보험 가입 현황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류현황
- 단체 가입현황,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및 MOU 현황 등 기술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조직체계(조직도)

-

*

- * 대표, 이사, 감사, 총무, 기획, 공동농작업단, 품질관리, 기술지도 등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관리 실태(2020년 3월말 기준)

사무실 존재 여부(여, 부)	현황판 비치 여부(여, 부)	
이사회 등 대표자 회의 연간 개최실적(총 횟수 및 참석자 수)	총회 등 참여농업인 전체회의 연간 개최실적(총 횟수 및 참석자 수)	
회의록 작성 여부(여, 부)	공동영농 작업일지 작성 여부(여, 부)	
회계서류 보관 여부(여, 부)	2017년 재무제표 작성 여부(여, 부)	
RPC 약정 계약서 작성 여부(여, 부)	기술정보 등 교육책자 배부·비치 여부(여, 부)	
최근 1년간 운영수익 환원 여부(여, 부)	최근 1년간 운영수익 환원 방법 및 금액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최근 1년간 교육·컨설팅 주요실적

교육명	주관기관		참석자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비용	
业书号	기관명	소재지	구분	인원수(명)	<u> </u>	(시간)	금액(천원)	처리방식
계				총 명				
બ/시)		<i>전남</i> <i>나주</i>	임원	대표 등 8명	식량작물공동(들 녘) 경 영 체 육 성 사업다각화 교육			<i>국가·지자체</i> <i>보조</i>
		<i>전북</i> <i>전주</i>	조직원	50명	000재배기술 교육			수익자부담

-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컨설팅에 한함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재배단지 지적도

* 분포유형 : 집단화 단지형(평야지 50ha이상, 산간지 30ha이상) ha, 분산형(4ha이상)	개

○ 최근 3년간 품목별 용도별 재배면적

단위 : ha

구분	품목명	고품질	친환경	GAP	가공용	수출용	특수용()
	쌀						
2019	품목명						
2019	품목명						
	품목명						
	쌀						
2020	품목명						
2020	품목명						
	품목명						
	쌀						
	품목명						
2021(계획)	품목명						
	품목명						

○ 논 이모작/타작물 재배면적

논 면적(A)	이모작 면적(B)	타작물재배면적(C)	비율(%)		
	어포크 한크(B)	다덕골세매진역(C <i>)</i>	B/A	C/A	
ha	ha	ha			

※ 이모작 재배 현황(2019년 수확 기준)

이모작 재배작목	면적(ha)	총 생산량(ton)

※ 논 하계 타작물 재배 현황(2020년 재배계획 기준)

타작물 재배작목	면 적 (ha)	총 생산량(ton)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미 신청 사유 기술(농지매입사업(농지매매, 비축 농지 임대), 간척지 임대조건, 신기술 보급사업 등)
- ※ 추후 이행점검 결과 확인 예정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회원 농기계 이용실태(2019년)

		, o 되 성능	작업면적(ha)				성능	작업면적(ha,)	
기종	소유자	(마력)	자기논	타인논	기종	소유자	(마력)	자기논	타인논
이앙기									
파종기									
살포기									
드론									
무인헬기									
콤바인									
트랙터									

*	농작업료	:	트렉터(
---	------	---	------

원/ha), 이앙기(원/ha), 콤바인(원/ha)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가축사육 실태(2020년 2월말 기준)

한우	사육	젖소사육		돼지사육		닭/오리 사육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마릿수
						/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 경축순환농업의 도입 및 이용실태
 - ① 사업유무 :
- ② 경축순환형태 : 면적 ___ ha, 농가수 ___ 호, 생산형태 퇴구비 ___ 톤, 액비 ___ 톤
- '경축순환' 관련 사업 지원이력

사업명					
지원년도					
지원내용					
총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기타
(백만원)					

○ 공동육묘 운영현황(2019년)

운영주체	00농협, 00법인	공동육묘장 규모	총 개동, m²		
육묘장 형태		공동육묘 착수년도			
공동육묘규모(장/년)	/	공동육묘 공급률			
공동육묘장 부대시설	모판상자수 <u>상자</u> , 지게차 <u>대</u> , 온탕기 <u>대</u> ,				
00440 741/12	파종기 <u>대</u> , 육묘다	<u> </u>	형태		
육묘 1장당 가격(원)		연 투여 인력(명)	명/일, 일/년		
자재 사용규모	종자량 <u>kg/년</u>	<u>년,</u> 상토량 <u>톤/년</u>	, 농약 <u>원/년</u>		

- * 공동육묘장 운영 매뉴얼 유무 :
- * 육묘일지 작성 여부 :
- * 주변지역 육묘 가격: 원/장
- * 자재비용 : 종자비 원/년, 상토비 원/년, 인건비 원/년
- * 혜택 농가 수 : 명
- * 시군별 지원여부
- * 총매출액(A): 천원 / 총비용(B): 천원 / 경영이익(A-B): 천원
- * 이익금 처분내용 :
- * 공동육묘장 활용계획: *농기계·농자재 보관, 타작물 재배, 농산물 건조, 체험공간, 활용 안함 등*

○ 공동방제 현황(2019년)

운영주체	00농협, 00법인	공동방제 장비 현황					
공동방제 착수연도		공동방제 공급률					
공동방제 규모(ha)	자체 방제면적	ha * <u>회</u> , 임대방제면적	lha *회				
방제단가(원/ha)	자체 방제단	자체 방제단가 원/ha, 임대방제단가 _ <u> 원/</u> ha					
방제기 운영 인력(명)		면허 보유여부					
물 공급방법		약제 구입방법					
부대장비		<i>트럭 대(톤)</i>					

- * 공동방제기 운영 매뉴얼 유무 :
- * 공동방제 일지 작성여부 :
- * 총매출액(A) : 천원 / 총비용(B) : 천원 / 경영이익(A-B) : 천원
- * 이익금 처분내용 :
- * 방제기 활용계획 : 축산방제, 건축물 폭파, 산림방제, 종자파종 등
- * 기타 공동농작업 면적 :

○ 표준생산매뉴얼 준수 여부

표준생산매뉴얼 유무		생산지침 제공유무	
교육·지도 방법	교육시간	<u>시간/년</u> , 현장지도_	시간/년
작업단계		생산매뉴얼 주요내용	
품종선정			
토양 채취 및 분석			
논둑조성			
봄갈이			
종자 파종량	g/상자		
10a당 상자 수	<u> </u>		
종자소독방법	온탕침법, 약제침지	/ 등	
육묘형태	어린모, 치묘, 중묘	, 성묘	
이앙 <u>시기 및</u> 방법	적정시기	적정이앙주수	주/3.3㎡
잡초관리	논두렁 분	로 <i>답</i>	
시비관리	밑거름 <u>kg/10a</u> /	<i>새끼거름 <u>kg/10a</u> 이</i>	삭거름 <u>kg/10a</u>
병해충관리	기본방제	보완방제	
6 에 중단니	병해충자재 종류 _		
물관리	중간물떼기, 물걸러	네기, 완전물떼기	
수확 <u>시기</u>	적정수확시기		
수매	산물수매시(지정 톤	트백사용), 건조수매시 45	5~50℃(종자용 40℃)
볏짚환원			
이모작 파종			
가을갈이			

- * 농가 영농일지 작성 여부 :
- * 농약안전사용기준·친환경유기허용자재 준수 여부 :
- * 생산관리자 운영 여부 :

Ⅱ.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성과

1. 현재까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지원 세부이력

- (교육·컨설팅)
- 2017년 사업비 20백만원(농가교육 5회, 선진지 견학 2회 등)
- (시설·장비)
- 2018년 사업비 200백만원, 공동육묘장

2. 지원 전·후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성과

※ 변화된 점을 수치 위주로 객관적 기술

구분	지원 전 (20ㅇㅇ년도)	지원 후 (20ㅇㅇ년도)
공동경영면적	ha	ha
참여농가 수	<u> </u>	<u> ই</u>
출자자 수	명	명
총 출자액	백만원	백만원
'법인등기부등본'내 출자액의 총액	백만원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백만원
영업이익	천원	천원
쌀 생산비 (천원/10a)	천원	천원
재해보험가입 농가수 등 기타	명	명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부분에 대한 부분만 산출

Ⅲ. 공동농업경영 추진계획

1.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병	ijφŀ
		\sim	'' '	,	_

- □ '중장기 비전' 기술
 -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하여 기술
 -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 또는 '실행방안'을 명료하게 기술

2. 공동농업경영 현황 및 계획

- □ 공동 영농작업 현황 및 계획
 - 농작업내용 : 육묘, 경운·정지, 이앙(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물관리, 수확, 건조·저장, 출하, 기타 등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공동영농 작업면적, 향후 3년 이내의 계획 및 추진방안
 - ()작업 : 현 공동 작업면적(ha), 계획면적(ha)
 - ()작업 : 현 공동 작업면적(ha), 계획면적(ha)
 - ()작업 : 현 공동 작업면적(ha), 계획면적(ha)
 - 공동작업별 추진방안 작성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2020년 공동영농 작업료 책정 계획
 - ()작업 : 계획(원/300평), 인근지역 농작업료(원/300평)
 - ()작업 : 계획(원/300평), 인근지역 농작업료(원/300평)
 - ()작업 : 계획(원/300평), 인근지역 농작업료(원/300평)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가 공동영농에 필요한 주요 농자재 구입방안
 - (보조사업)
 - (자체구입)

□ 주요 시설 운영 현황 및 계획
○ 공동영농에 필요한 주요 시설 운영 현황과 부족한 시설의 추가 확보 방안
(확보방안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지원인 경우, 신청사유, 규모,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① 공동육묘장
● 현재 보유현황(동, m²), 확보계획(년 동, m²)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시설규모 등
② 건조시설
• 현재 보유현황(), 확보계획()
• 확보방안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
불가)
③ (기타 시설명)
• 현재 보유현황(), 확보계획()
확보방안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공동소유 시설 마련에 소요자금 확보 계획
-
□ 주요 장비 운영 현황 및 계획
○ 공동영농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 추가확보 및 과잉 농기계 처분방안 <i>(확보방안이</i>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지원인 경우, 신청사유, 사양, 예상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술)
① 광역살포기

• 현재 보유현황(기종, 대), 확보대수(년, 기종, 대)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 ② 드론, 무인헬기
 - 현재 보유현황(기종, 대), 확보대수(년, 기종, 대)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 ③ 트랙터
 - 현재 보유대수(주요 마력수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처분대수()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 처분방안 : (내용연수 2년 지난 중형 5대, 중고농기계로 판매예정)
- ④ 콤바인
 - 현재 보유대수(3조, 4조, 5조, 6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처분대수()
 - 추가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 처분방안:
- ⑤ 이앙기
 - 현재 보유대수(6조, 8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처분대수()
 - 추가 확보방안 :
 - 처분방안 :
- ⑥ 기타 장비
 - 현재 보유대수(6조, 8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처분대수()
 - 추가 확보방안 :
 - 처분방안:

	민력확보	. 및 ㅇ	용방안
--	------	-------	-----

- 공동영농작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방안
- -
- 공동영농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잉여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

_

- □ 조직원 교육·컨설팅 지원 방안
 - 향후 1년 이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추진계획

연번 수행업체		구!이다!!		비고		
언민	十행합제	참여대상	교육·컨설팅명	교육·컨설팅내용	예상금액(천원)	
총계		명			천원	
1						
2						
3						

□ 대외협력 강화 방안

○ 관련 협회 가입,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교류를 통하여 정보취득, 공동구매·농기계 이용 등의 공동농업경영 성과제고 방안을 기술

_

3. 고품질 농산물 생산

- □ 품목별 계약재배 면적 및 품종
 - 계약재배 품목, 품종, 품종별 계약재배 면적(물량) 기술
 - 계약재배 대상 RPC, 농협, 업체 등 관련내용 기술
- □ 품목별 품질기준 및 생산지도
 - 품목별 인증현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서 공동경작하는 농산물에 대한 GAP·친환경농 산물 등 인증 관련 인증기관, 인증종류, 유효기간, 인증품목, 인증 제배면 적 기술
 - 품질기준
 - 지역에 적합한 고품질 벼 품종 선정, 작부체계 운영, 토양관리 등 생산일관 관리 내용, 품질기준 준수 방안 등 기술
 - 고품질 생산(재배) 체계구축
 - 메뉴얼 구비·준수 확인 절차, 교육 등 기술
 - 생산지도
 - 품질기준에 맞는 벼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지도, 토양·수질·생산물 검사 및 평가 지도 방안
 - 제재사항
 - 품질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

4. 경영체 운영 계획

	농가의	공동	영농	비용	처리	방법
0	비용	납부	대상,	방법	등	
-						

*

- □ 농가로부터 받은 공동영농 작업료 및 이익금 처리 방법
 - 농작업 위탁 농업인으로부터 받은 농작업료의 관리방안

-

○ 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합원(주주)와 참여농가 공유 방식 및 내용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서 공동농작업으로 창출된 이익금 처리방안

*

5. 세부 추진계획

○ 교육·컨설팅 세부내역

교육·컨설팅명	교육・컨설팅내용	예상금액(천원) 산출기준		추진시기
		천원		

○ 시설·장비 세부내역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 * 본 자료는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비교견적서(3개소 이상) 등은 반드시 첨부)
- * 육묘장은 사업다각화의 가공시설 건립계획과 사업추진일정, 부지확보현황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

○ 사업추진일정(계획)

	사업신청년도(2020년)									入	나업추	스진년	도(2) 2 1년	<u>l</u>)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설계검토																								
일상감사																								
시행업체 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행업체 선정계약																								
사업착수																								
교육																								
컨설팅																								
기계납품																								
시험운행																								
검수																								
정산																								
기타																								

* 각 단계별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일정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할 것

IV. 사업다각화 추진계획

*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신청자는 삭제 후 제출

1. 사업개요

사업명칭				
사업기간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다				
투자계획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천원)				

2. 추진목적

-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산업별 여건
- 지역적 여건
- 내부 역량
- 2) 시장·환경 분석
- 마케팅 분석
- 해외·국내 유사사례 등
- 장단점 분석 및 대응전략
- 3) 비전과 목표
 - '사업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비전 제시
 - 비전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향후 5년 이내)
- 3. 사업추진 의견수렴 현황 및 계획

0

_

4. 세부계획

- 1) 사업추진체계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과제(공동농업 추진 관련, 세부실행 방안 제시)
 - 조직화 부분 전략
 - 생산 부분 전략
 -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 전략
 - 가공·유통 부분 전략
 - 홍보·마케팅 부분 전략
- 2) 세부 추진계획
 - 사업추진 로드맵

구분	2020년(사업준비)	2021년(사업기간)	2022년(사업기간)
목표 및 지표	• - • -	• - • -	• - • -
과제 및 실행 계획	 과제 계획 - - - - 	• 과제 - 계획 • - • - • -	• 과제 - 계획 • - • - •

* 연차별 추진목표 및 지표(정량화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와 실행계획을 제시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추진과제	현황과 문제점	실행계획	세부사업 내용
예시) 교육·컨설팅 농업인 역량강화, 조직화, 법인 운영 등			
예시) 생산 기반 강화 이모작: 타작물			
예시) 농신물 기공 기반 조성			
예시)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세부사업 내용	재 원	2020년	2021년	합계
		소계			
		국비			
04/4/)		지방비			
0 X 		자부담			
생산 기반 강화		소계			
이모작·타작물		국비			
		지방비	•		
		자부담	•		
		소계			
		국비			
0// / /)		지방비			
0		자부담			
체험·관광 기반		소계			
<i>구축</i>		국비			
		지방비			
		자부담			
4.4		소계			
		국비			
		지방비			
04/1/)		자부담			
농산물 가공		소계			
기반 조성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0// / /)		지방비			
0//1/)		자부담			
<i>농산물 유통</i>		소계			
기반 조성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예시) 농업인 역량강화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하나게	1111			
	합계				

3) 2020년 사업예산 요구액

7 8	시어라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구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비중(%)
계						
○ <i>추진과제</i>						
- 사업내용						
· <i>물품명</i>						
· 용역명						
0						
_						
_						
•						
0						
_						
_						
•						
0						
_						
•						

4) 2021년 사업예산 요구액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亡	사비당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비중(%)
계						
○ <i>추진과제</i>						
- 사업내용						
· <i>물품명</i>						
· 용역명						
0						
_						
•						
0						
_						
•						
0						
_						
_						
•						

○ 가공시설 건립계획

_

- * 대략적인 계획이 아닌 실제 실행계획을 자세히 작성하고, 조감도 및 간이 설계도(최소 3종 이상), 비교견적서(3개소 이상) 등은 반드시 첨부
- *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하여 첨부(엑셀양식: 별도통보)

<가공시설>

7 1	N 61 ml.	-1 61	-11	N 61-11	11 - 1 - 1 -	-1 1 1 4 -1 -1 1 -1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 • 건축공사 감리						
- 컨설팅 (성능시험 등)						
감리 및 컨설팅 합계						
2. 기계 및 장비						
2-1) 가공부(I)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2-2) 가공부(Ⅱ)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2-3) 포장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소계						
기계 및 장비 합계						
3. 건축 및 토목						
3-1) 건축						
- 가공부						
- 회의실						
-						
소계						
3-2) 토목및소방등기타						
- 토목공사						
- 1차수전공사						
- 소방 및 통신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4. 기타						
4-1)유통시설						
- 지게차						
-						
소계						
4-2) 위생시설						
- 오수처리시설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총사업비						

-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 * 유사시설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건조저장시설>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소계						
2. 원료투입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3. 건조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4. 저장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출고시설						
-						
소계						
5. 토목 및 건축공사						
-						
-						
소계						
총사업비						

-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예정
- * 저온창고 등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 사업추진일정(계획)

				人	나업 산]청년	도(2	0 2 0년	<u>l</u>))	나 업추	친선	[도(2	021년	<u>a</u>)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기본설계																								
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																								
설계검토																								
일상감사																								
인허가																								
시공업체 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계약																								
공사착공 (건축)																								
공사착공 (기계)																								
시운전																								
성능검사																								
공사준공																								
정산																								
기타																								

^{*} 각 단계별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일정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할 것

5. 부지확보현황

○ 부지 확보여부 : *확보완료, 확보 중(가등기)*

○ 위치 : 시·도 시·군 대로·로·가 (읍·면·동 번지)

* 물류, 교통, 기존 위성시설과의 거리 등 부지의 특성 자세히 기재

○ 부지면적 : m2(평)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 건축물대장 등
-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규제 검토 결과 : 상세히 기재(관련 인허가 부서의 검토결과 반드시 첨부 -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사전심사 예시>

ユ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u> </u>	<u>T</u>	ળા જ / ૧ જ	イエイセ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도시	9 -	농림지역		o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인 경우 건축물이나
관리	용도 지역	(농업진흥	조건부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계획	4 1	구역)		관하여는 농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농지,	농지법	농업(진흥, 보호구역)	가 능	o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상황이므로 허가 가능.
산지 등	농어촌 정비법	기타	조건부	o 공장신설 부지는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복모 지구 경지정리 연접지역으로 공장부지 진출입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	<u>. </u>	-11 0 1 0	112-16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로로 계획된 복모리 457-17(구거)번지는 농어 촌정비법 제23조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대상입니다. 이 사업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농업용수공 급 및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히 정화 처리 후 배출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 피해방지에 철저를 기하시고 피해발생시 사업 주가 즉시 정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공장신설 시 지적경계 측량 후 농업기반시설 (농로, 배수로)과 이격하여 건축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점유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동 건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와 피 해보상 및 민원 등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 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도로,	하수도 법	배수구역, 개인하수 처리시설	조건부	 오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사용승인 이전까지 납부 폐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공공하수도에 오수연결 허가 가능하며 우수는 신청 토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해당됨으로 건축허가 시 하수도법 34조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함.
하천 등	도로법	도로, 접도구역	조건부	 이 해당구간은 제출서류로만 검토하였을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하가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않아연결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 변속차로의 길이는 건축물의 업종 및 법정주차대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며, 기존 버스 포켓차선과 도로점용연결 허가로 설치되는 가속차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 분		케마기카	コヒ이거	공장입지 제한내용
T	仓	해당사항	검토의견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조건부	 전안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의 의거 상수도원인 자부담금 부과대상임. 건축허가 후 수도신청 시 "급수공사 시행승인 신청"에 의함. 부지 내 수도계량기 설치 공간 (0.8 x 0.6) 확보 요함. 급수관 분기위치 및 관경, 급수 가능 여부등 세부사항 착공 전 별도협의
	소음, 진동 관리법	배출시설 설치허가	조건부	o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 소음, 진동 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특정 공사 사정신고를 하여야 함.
환 경	_	총량규제 지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조건부	o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및 소음배출 시설 시행규칙 별표1의 배출시설은 설치 할 시 대기,소음 배출시설 신고대상임. ○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일 경우 대기환경보 전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전(착공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 야 함.
	환경 영향 평가법	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조건부	o 사업장 부지 개발면적이 7,500㎡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 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지정 등(허가) 전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 모 환경양향평가 협의를 득하여야 함 (도로점 용허가 포함)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처리시 설 설	폐기물처 리시설 설 치계획	조건부	o 당해공사로 인해 5톤 이상 건설폐기물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구 분		케마기카	거두이거	공장입지 제한내용			
1 T		해당사항	검토의견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지 촉 진 및 주변지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7]	문화재 보호법	보호구역	조건부	o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확인되면 "매자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7조에 의거 신공.			
타	자연 재해 대책법	자연재해 위험지구	조건부	o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2규정 의거 공장설립에 따른 제조시설 면적 500㎡이상일 경우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제출.			
기타 사항	[건축관련] o 건축법 제44조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계획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함. [개발행위관련] o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도로)의 도로확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o 공작물 설치 시 무게 150t, 부피 150㎡, 수평투영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다만,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축조 신고 등의 대상인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름) [지적관련] o 지적 소관청에 지적공부정리(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종합 의견							
	위 확인]사항에 의문	는이 있는 경·	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V. 사업비 확보계획

1.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추진현황
- 지방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기재
- 향후계획
- 지방비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을 기재
 - * 지자체 방침 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시·군은 반드시 시장·군수 결재본), 지방의원 설명 근거 및 지방의회 동의(협조) 문서 등

2.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단위: 천원)

수 .	ዼ	조 달				
항 목	금 액	첫 다	금 액			
99 47	금 액	항 목	기 확보	계획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자부담 - 출자액 (자본금)				
ㅇ 부지조성공사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 설치사업비		- 기타				
○ 결시사합미 		ㅇ 보조금				

- 자부담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을 기재
- * 이사회 결의서 및 출자협약서 등 제출

VI. 기대효과

1. 정량적 성과지표

⊐H	추진계획								
구분	농기수(호)	공동경영면적(ha)	답리작(ha)	타작물(ha)	출자자수(호)	매출액(백만원)			
2020년(A)									
2021년									
2022년									
2023년(B)									
증감%(B-A)/A									

^{*} 공동농작업율 증대(%), GAP·친환경 인증 증가, 일자리 창출효과, 방문객 수 등 작성 가능

2. 정량적 성과지표 이외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기술

0	(생산분야	:)
---	-------	----

-

*

○ (가공분야)

-

*

○ (유통분야)

-

*

○ (기타)

-

*

[별지 제3호 서식]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및 유지 서약서

○ 경영체명 : ○ 주소 :

○ 대표자 : ○ 생년월일 :

상기 경영체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1. '20년부터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향후 3년간 추가로 50ha(조사료는 100ha) 이상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 2. '19년도 논 타작물 재배면적과 '22년까지 확대한 면적을 '20년부터 향후 5년 이상 벼 재배로 회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타 작물을 재배할 것을 약속합니다.
- 3. '20년부터 공동영농면적을 최소 50ha ~ 100ha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구분	공동영농		비율				
T &	면적(A)	총 면적(B)	(품목명1)	(품목명2)	(품목명3)	(품목명4)	(B/A)
'19년	ha	ha	ha	ha	ha	ha	%
'20년	ha	ha	ha	ha	ha	ha	%
'21년	ha	ha	ha	ha	ha	ha	%
'22년	ha	ha	ha	ha	ha	ha	%

4. 상기 사항의 이행의무가 '20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보조금 교부 조건에 포함되었음을 인지하였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교육·컨설팅 지원 중지, 사업다각화 신청 제한,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중지 등을 수용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일

법인명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중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계획서 및 확약서

○ 경영체명 : ○ 주소 :

○ 대표자 : ○ 생년월일 :

상기 경영체는 '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 참여 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1. 식량생산의 핵심리더인 경영체로서 쌀 수급안정을 위해 '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 2. '20년 쌀 수급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9년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신청하겠습니다.

들녘경영체 현황 19년 논 6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	지원 사업	'20년 논	타작물 재배 참여 계획	지원 사업
참여 농가수	공동경영 면적(A)	품목	신청 면적(B)	참여율 (B/A)	품목	신청 면적(B)	참여율 (B/A)
호	ha		ha	%		ha	%

- * '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미 포함된 논 타작물 재배 공동경영면 적 : ha
 - 3. 상기 사항의 이행의무가 '20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보조금 교부조건에 포함되었음을 인지하였고, 지원기준(시설·장비 15% 이상, 다 각화 30% 이상, 잡곡전문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19년 11월 일

법인명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중